

평생교육시설 행정처분(등록 취소) 통지 공시송달 공고

「평생교육법」 제42조(행정처분)의 규정에 따라 인가 또는 등록 시의 기준에 미달되어 평생교육시설 등록 취소를 통지하였으나 폐문 부재로 우편이 반송됨에 따라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니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 평생교육시설 행정처분(등록 취소) 통지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6. 4. 16. ~ 2026. 4. 30.(14일)
3. 대상 평생교육시설

시설명	설치자	주소	비고
GCR원격평생교육원	주식회사 클릭온 스페이스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298(서성동), 경남대학교 창업보육관 406호	
GCR평생교육원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298(서성동), 경남대학교 창업보육관 502호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인가 또는 등록 시의 기준에 미달
 - 평생교육시설의 신고된 장소(주소지 또는 원격 교육 사이트)에서 평생교육 과정 미운영 및 부존재
 - 평생교육시설 폐쇄 사실 미통보
5. 처분 내용: 평생교육시설 등록 취소
6. 처분 일자: 2026. 4. 2.(목)
7. 근거 법령: 「평생교육법」 제42조(행정처분),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송달의 효력발생)
8. 참고 사항
 - 가.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www.simpan.go.kr)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나. 위 행정처분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교육청 교육복지과(055-210-0597)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4월 15일

경상남도교육감

